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중재법 현안

박정현

(중국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법학박사)

I. 들어가며

II.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1. 임시적 처분
2. 긴급중재판정부제도의 설립
3. 중재인 명부 개방
4. 다수 중재절차의 병합 세분화
5. 중재와 조정의 결합
6. 타방당사자(제3자) 제도
7. 소액분쟁절차 규정

III. 나가며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들어가며

중국 정부는 투자분야 개방확대, 대외무역 발전 모델 전환, 금융산업 개혁개방 및 법적·제도적 보장 개선 등 5대 목표를 내세워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 정식 출범하였다. 기존 개발구와 기능상 큰 차이는 없으나 서비스업 개방, 금융개혁과 같은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투자, 무역관리 외국인 투자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와 무역관리 방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법제환경에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부른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의 계약 및 기타 재산권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 중재법을 근거로 한 (신)중재규칙을 제정하여 2014년 5월 1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을 시행하였다. 별도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만을 관할하는 중재규칙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구중재위원회는 국제, 섭외안건과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분쟁안건, 자국 내 분쟁안건을 취급한다고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무역구중재위원회는 상해자유무역시범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 전문기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특징은 중재임시조치제도 개선, 긴급중재정 제도 설립, 개방형 중재원 제도 확립, 병합중재의 세분화, 중재와 조정 결합 개선, 타방당사자(제3자)제도, 소액분쟁절차 등을 볼 수 있다.

본고는 2014년 5월 시행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1. 임시적 처분¹⁾

중재임시적 처분제도의 주요 목적은 분쟁당사자들의 재산상태나 지위 등의 법률관계

1)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3장 “임시적 처분” 참조.

유지이다. 중재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정 분쟁해결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원만한 판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재산상태나 지위 등 법률관계를 임시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임시적 처분의 주요 내용은 재산보전명령, 증거보전명령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적 처분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또한 임시적 처분을 관할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²⁾ 있지만,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임시적 처분의 절차에 있어서, 중재기구는 신청 및 접수만 할 수 있다. 중국 입법상 임시적 처분 결정권은 인민법원에만 부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동시에 결정권을 가진 것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 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³⁾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행위보전적 처분을 반영했다. 또한 요즘 중국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⁴⁾

그 외에도 임시조치는 법률적 충돌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20조,⁵⁾ 임시적 처분은 반드시 집행지 관할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집행지 관할법률과 중재규칙이 서로 충돌할 경우 집행지 관할법률을 우선한다. 만약 국제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판결을 받아 중국국제중재원을 통하여 임시적 처분집행하고자 하여도, 중국 입법상 중재규칙은 민사소송법규정에 위배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국제중재원을 통하여 중국 인민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만 할 수 있다. 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이 아무리 임시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중국 국내

2)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18조 “当事人可以根据临时措施执行地所在国家/地区有关法律的规定向仲裁委员会及/或具有管辖权的法院提出如下一种或数种临时措施的申请.”

3)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18조 “1, 财产保全; 2, 证据保全; 3, 要求一方做出一定行为及/或禁止其作出一定行为; 4, 法律规定的其他措施.”

4) 傅雪峰,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에 대한 분석”,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제6집 제2호, 2014.11.30, p. 420 참조.

5)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 20조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임시조치 신청 시, 반드시 임시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시조치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2. 임시조치 신청이유
3. 임시조치 구체적 기술
4. 임시조치 집행지 및 관할 법원
5. 임시적 처분 집행지 관련 법률 규정

에서 집행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된다.

2. 긴급중재판정부제도의 설립

보통 신청인을 위한 임시적 제도인 임시조치는, 법원에 신청에서부터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비밀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필요 대응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안된 것이 긴급중재판정부제도⁶⁾이다.⁷⁾ 이와 관련 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21조⁸⁾에 규정되었다.

3. 중재인 명부 개방

국제적으로 중재인 선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중재인 명부이다. 왜냐하면 중재인 명부를 통하여 중재인의 자격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중국의 중재인 선정은 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법률에 대하여 지식을 갖춘 자만이 중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중재인명부의 중재인을 선정하였어도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의 중재인이 과연 각종 중재안건에 합당한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다.⁹⁾ 이

6) 이와 유사한 제도로 긴급중재원제도, 응급중재원제도 등이 있다.

7)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p. 275 참조.

8)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21조 긴급중재판정부: ①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경우, 집행국가·지역의 법률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중재판정부를 신청한다. 당사자가 긴급판정부신청 시 서면으로 하며, 반듯이 이유를 기술한다. 긴급중재판정부 구성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중재위원회 결정으로 긴급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당사자는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중재비용표의 의거하여 예납금을 지불한다. 긴급중재판정부 구성 신청이 완료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내 중재원 명부 중 1인으로 한 긴급중재판정부 구성하고,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다. 사무국이 긴급중재판정의 구성 현황을 당사자에 알려준다. ③ 긴급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본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공표의무를 갖는다. 당사자는 본 규정 제32조에 근거하여 긴급중재판정의 중재인 신청 회피를 할 수 없다. ④ 긴급중재판정부는 본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적 처분 신청을 재결한다. ⑤ 긴급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해산하는 날, 중재판정부에 관련 자료 전부를 전해줘야 한다. ⑥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긴급중재판정부의 중재인과 임시 조치 신청 관련 분쟁사건의 중재인은 재신임 될 수 없다. ⑦ 본 규정의 절차는 중재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许进胜, 中国涉外商事仲裁事务指引, 法律出版社, p. 197 참조.

에 상하이중재위원회는 독립적 중재인 명부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27조¹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수 중재절차의 병합 세분화

ICC중재법원은 “당사자들이 병합에 동의하고, 중재의 모든 신청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따르는 경우, 또는 중재의 신청이 둘 이상의 중재합의에 따른 경우에도 중재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이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중재절차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을 허용한다.”¹¹⁾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병합은 크게 자발적 병합과 비자발적 중재절차 병합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발적 중재절차 병합은 중재 근원인 당사자 자치에 위반되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판례가 없는 편이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36조 중재절차 병합¹²⁾은 ‘안전병합’으로 명문하고 있어, 중재절차 병합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5. 중재와 조정의 결합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에 회부한다.¹³⁾ 하지만 중국의 경우 ‘중재 중 조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조정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조정 성립과 무관하게 중재절차를 바로 진행하여 중재와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과연 중재인이 동일한 안전에서 조정인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10)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27조 중재인의 인선: ① 당사자는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중재인명부외의 인사를 추천 받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중재인명부 외의 인사를 공동 추천하여 1인 중재인 또는 중재인 의장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1) ICC 중재규칙 제10조 참조.

12)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36조 안전병합: ① 당사자들이 중재 기준이 동일한 2개 또는 2개 이상 관련 있는 사건을 병합에 동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병합 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처음 개시된 중재절차로 병합된다. 당사자들이 일치한 판결문을 받은 경우, 비로서 중재판정부는 병합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판결문을 낸다.

③ 중재판정부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2개 또는 2개 이상의 사건은 본 규정을 적용 하지 못한다.

13)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중재규칙 제18조 참조.

조정인과 중재인이 동일 인물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하였을 때 조정과 중재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정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 조정인이 다시 중재인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다.¹⁴⁾ 또한 조정과 중재를 모두 진행하여 비용 및 시간의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의 제6장은 중재와 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0조의 규정¹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재절차 개시 전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상사분쟁에서 많은 당사자가 중재절차 개시 전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인식하여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6. 타방당사자(제3자) 제도

중재에서 제3자란 중재 당사자 외의 중재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자로서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가르킨다. 보통 제3자 중재 또는 제3자 외 중재로 구분한다. 하지만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에서는 소송의 제3자와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타방당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제37조와 제38조¹⁶⁾에

14) 傅雪峰,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에 대한 분석”,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제6집제2호, p. 428 참조.

15)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50조 조정인 조정: ① 일방 당사자가 중재사건수리 후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서면으로 조정 신청을 제기하고, 중재위원회 주임이 상대당사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인 명부중에서 1인 조정인으로 조정분쟁을 진행한다. ② 조정인의 조정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의 중재절차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조정진행 중,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잠시 유예 신청을 제기하고, 상대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 하였을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구성 절차를 잠시 유예할 수 있다. ③ (조정인 조건) ④ 조정인은 당사자 화해합의의 방식으로 조정 분쟁을 진행 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조정인 조정을 통하여 화해합의를 한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중재판정부는 화해합의 내용을 근거로한 중재판결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조정 중, 당사자가 조정 중지를 제기 할 경우 조정인은 조정을 중지한다. 조정인 조정절차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중지한다. ⑦ 당사자 서면 동의를 제외하고 조정인이 중재인으로 재임 될 수 없다.

16)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37조 타방당사자 중재절차 참여: ① 중재판정부 구성 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중재합의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인 타방당사자를 추가 신청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사무국이 타방당사자 추가를 결정한다. 사무국이 타방당사자의 추가를 동의하였을 경우, 다수 신청인 및 다수 피신청인이 이미 선정한 중재인 또는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택할 수 없다. 즉, 관련중재인 모두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②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되었을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동일한 중재합의의 피신청인인 타방당사자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또한 중재합의한 당사자가 중재인 재선임 포기와 동시에 중재절차가 이미 진행 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타방당사자 추가를 결정한다.

서 구분하고 있다. 본 규정을 살펴보면,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제3자참여 중재와 제3자 외 중재 모두를 규정하고 있어 혁신적이라 할 수 있겠다.

7. 소액분쟁절차 규정

저비용 고효율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소액분쟁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액분쟁 절차를 살펴보면 분쟁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효율적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일반 중재절차보다 단기간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분쟁절차 비용도 줄어든 것이라는 것이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9장 소액분쟁절차¹⁷⁾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소액분쟁절차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일반방식, 간이방식, 소액분쟁방식 등 세 종류로 분쟁 진행방식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분쟁기간과 소요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일반방식의 경우 국제 및 섭외안건으로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판정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분쟁액이 10만 위안 미만의 소액안건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45일 내에 판정이 나도록 하고 있다.

〈표 1〉 안건별 진행방식과 진행기한¹⁸⁾

진행방식	적용금액 범위	답변 및 반론 기한	판정기한
일반방식	조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국내 안건 20일) 답변서 회부 - 신청인이 반론서와 첨부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국내 안건 20일)피청구인의 반론서에 대해 답변서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및 홍콩, 마카오 안건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내 판정문 완료 - 국내 안건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4개월 내 판정문 완료

17)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제9장 소액분쟁절차: 제71조 소액분쟁절차의 적용, 제72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73조 답변 및 거부권 제74조 심리방식, 제75조 개정통지, 제76조 재결기한, 제77조, 절차변경, 제78조 기타조항의 적용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18) KOTAR&globalwindow.org,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5월부터 실시, 김명신(상하이무역관), 2014년.

진행방식	적용금액 범위	답변 및 반론 기한	판정기한
간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액이 10만 위안 초과 100만 위안 미만의 경우 - 분쟁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나 당사자 양측이 간이방식 채택에 동의할 경우 - 분쟁액이 없거나 분쟁액이 불명확할 경우, 중재위원회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간이방식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답변서 회부 - 신청인이 반론서와 첨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피신청인의 반론서에 대한 답변서 회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내 판정 완료
소액분쟁방식	분쟁액 10만 위안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 회부 - 신청인이 반론서와 첨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피신청인의 반론서에 대한 답변서 회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45일내 판정문 완료

출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Ⅲ.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입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며, 따라서 아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해본다.

첫째, 중재합의 유효성 문제이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자유무역시범구내에 활용을 목적으로 입법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합의 유효성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구 내 기업과 외자기업이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상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기업이 상사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선 중재지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원이 될 것이며, 두 기업 중 한 기업은 중재합의 조건이 정당하므로 직접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상대 기업에서는 중재합의 무효 주장과 동시에 사법 절차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과연 중재합의 유효성의 문제는 직접 중재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중재합의 유효성 확정을 어느 기관이 심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

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국 중재법(2009년)개정안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시 중재위원회가 재결하거나, 인민법원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중재위원회 재결을 요청하였고, 한쪽 상대방이 인민법원에 재결을 요청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의 재결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이의신청한다.” <상하이고급인민법원 중국중재법집행관련> 통지에서는 “중재합의 유효성 확정안건 및 중재 재결 취소 신청안건에서 중재합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중재합의 유효성 확정판결을 청구하거나 상해중재분원에 중재판결 취소신청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중재법>은 중재합의 유효성 심의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중국에서 중재합의 유효성 심의권은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 모두 결정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다. 본 규정에 대한 구체적 사법해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있다고 하여도 이미 10년전에 제정되었다. 이는 관사의 경험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둘째, 중재 임시적 처분 집행 방법이 모호하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에 임시적 처분 집행 방법에 있어서 중재기관은 접수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¹⁹⁾. 이는 적지 않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중재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 할 것이다. 현행 중국 입법상 임시적 처분 결정권은 인민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동시에 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임시적 처분제도의 법률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은 집행지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외자기업이 중국국내 기업과 상사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임시적 처분을 요구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중재기구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고, 중재기구는 다시 관할 인민법원에 임시적 처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중재절차 중 피신청자가 재산 및 증거를 은닉하였고, 신청자가 이를 모른 채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중재절차가 진행하던 중,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중재판정부는 주동적으로 신속한 판결 및 인민법원에 재산, 증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재산, 증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중국 국내법상 임시중재제도, 개방적 중재인명부 제도 등의 많은 부분이 중국 입법에 위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과제로 남으며, 이

19) 중국 민사소송법 제272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중재기관은 응당 당사자를 도와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한다.”

점이 해결되어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의 중재절차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다른나라와의 법률적 이견을 줄이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立斌主编, 自由贸易区司法评论, 法律出版社, 2014年。

黎明、郑少华主编, 自由贸易区法律适用, 法律出版社, 2014年。

傅雪峰,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에 대한 분석”,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제6집 제2호, 2014.11.30.

许进胜, 中国涉外商事仲裁事务指引, 法律出版社.

KOTAR&globalwindow.org,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5월부터 실시, 김명신(상하이무역관), 2014년.